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4월 0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4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진정 설립의 확인)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

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그 이전 감사원은 지자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공증규정”**에 대하여  
수탁자가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6개 조례에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해  
길게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조(「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재협약대상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u>이 경우 협약사항은 공증한다.</u></p> <p>1.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21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p>	<p>제12조(협약체결 등) ①</p> <p>-----</p> <p>-----</p> <p>-----</p> <p>-----</p> <p>-----</p> <p><u>&lt;후단 삭제&gt;</u></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u>	제16조(협약체결 등) ----- ----- ----- -. <후단 삭제>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u>	제9조(협약체결 등) ----- ----- ----- -. <후단 삭제>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u>	제 7 조 ( 협 약 체 결 ) ----- ----- ----- --. <후단 삭제>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제21조(협약체결 등) -----

<p>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u></p> <p>1. ~ 7. (생략)</p>	<p>----- ----- - <u>&lt;후단 삭제&gt;</u></p> <p>1. ~ 7. (현행과 같음)</p>
--	---

□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8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u>7.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u></p> <p><u>8.</u> (생략)</p>	<p>제 1 8 조 ( 협 약 체 결 )</p> <p>-----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7.</u> (현행과 같음)</p>